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732호

다. 제출일자 : 2020. 8. 12.

라. 회부일자 : 2020. 8. 21.

2. 제안사유

- 주차수요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공영주차장 금지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 지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의 주차금지체계를 개별지점 단위 5개 금지에서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금지 체계로 변경함(안 별표1 비교3)

- 주차장별 요금 차등화를 위해 해당 금지 요금에 지역별 공시지가 변수 적용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하단)
-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급격한 요금인상 방지를 위해 시장의 요금조정 범위를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변경함(안 별표1 비고4)
- 주차금지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1금지 지역(4대문 주변지역 등 10개 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으로 명문화함(안 제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5. 14.~6. 3.)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1998년 이후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 공영 주차장 주차금지체계를 현행 5금지 체계에서 3금지 체계로 변경하고 현행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적용 및 녹색교통지역내 인상율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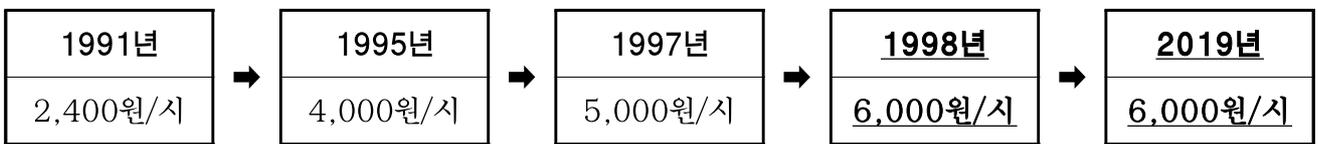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현행 조례는 도심, 용도지역, 환승 등을 고려하여 5개 주차금지와 그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1금지의 경우 '90년대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총 10개 지역내로 고정하고 있으며, 2~5금지는 주차장 위치에 따라 개별 주차장 단위의 금지를 설정함으로써 이용자 인식과 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음
- 먼저, 금지 체계를 살펴보면 금지 선정시 지하철 역세권의 교통수요 밀집지역,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등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교통수요관리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녹색교통지역 등 강화된 주차수요 감축

방안 적용을 위한 유연한 급지 체계 개편안 마련이 요구되어 왔음

- 주차요금을 살펴보면 '98년 이후 현재까지 주차요금이 동결됨으로써 주차면당 건설비 증가,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에 대응하는 주차수요 관리정책이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고 지역별 특성인 토지이용가치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별 주차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등 주차요금의 합리적 개선과 현실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주차요금 변화(1급지 노상주차장 기준) : 21년간 동결



■ 주차요금 부과 근거

- 현행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등에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¹⁾ 있어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6조 및 별표 1에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을 1~5급지로 등급별로 나누고 1회, 1일, 월정기권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 하고 있음²⁾

1)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2) 급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언급되지 않으며 서울시 조례의 「별표1」

■ 5급지 → 3급지 체계 및 월정기권 기준 변경(안 별표1 비고란 제3호, 주차요금표)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3호는 급지의 기준을 지역별, 기능별로 구분한 현행 5급지 체계를 지하철역 반경을 기준으로한 3급지 체계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따르면 '90년대 교통혼잡지역인 사대문을 비롯한 10개 지역을 1급지로 정하고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함에 따라 개별 주차장 단위로 급지가 지정되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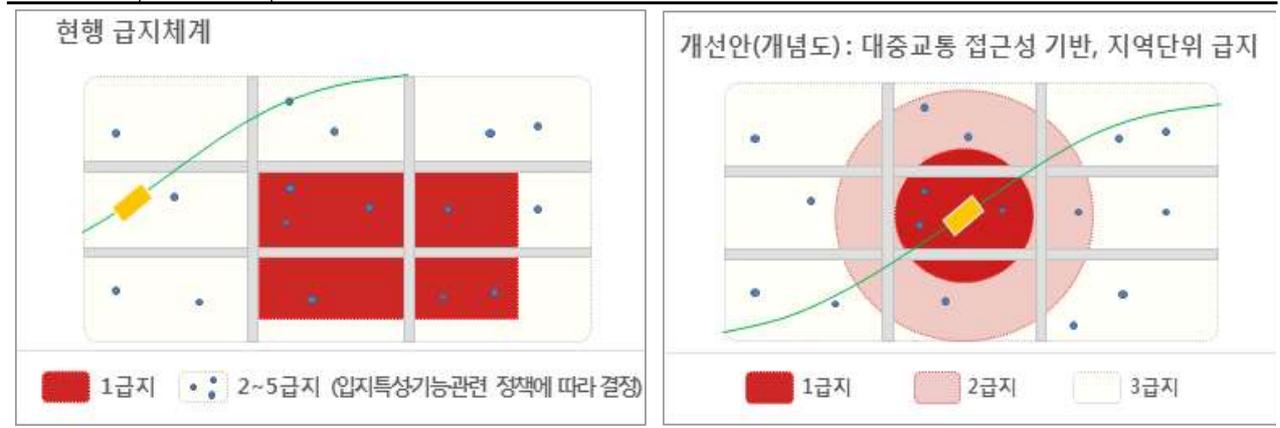
- 하지만, 1급지를 제외한 2~5급지는 용도지역, 환승기능, 야간 주차, 주택가 주차 등 급지 선정기준이 직관적이지 않고 주차장 위치에 따라 개별 단위로 급지가 정해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해당 주차장에 대한 급지 인식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역세권 교통수요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5급지에 포함되는 등 자가용 이용수요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정책추진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5급지 체계를 대중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지하철역 중심의 3급지 체계로 조성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명료한 급지체계를 만들려는 동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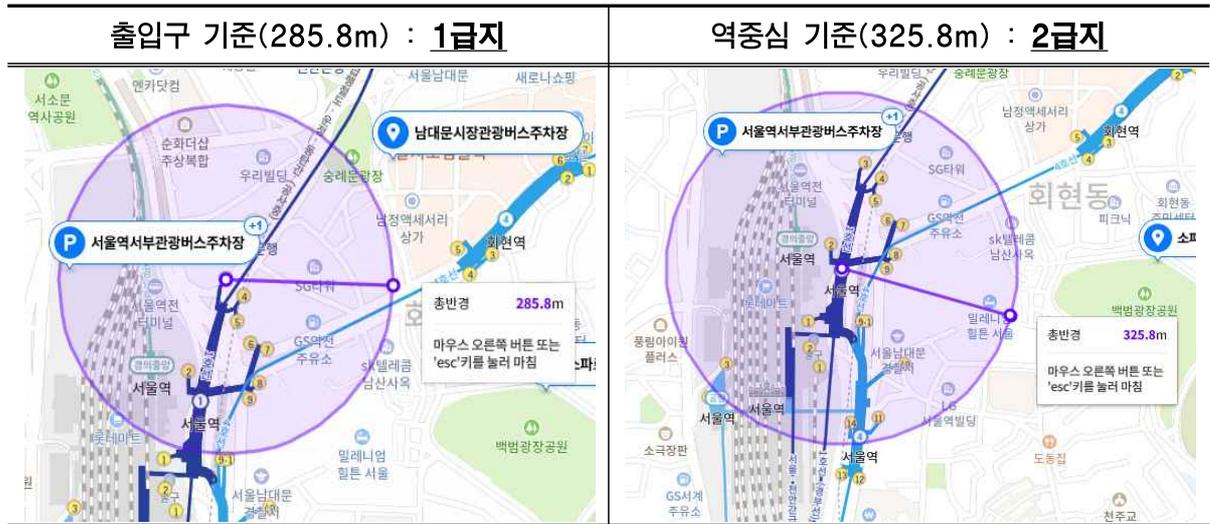
※ 주차금지 개정내용

금지		구 분	
현행	1 금지	(1) 4대문 주변지역 일대 (3) 영등포지역 일대 (5) 잠실지역 일대 (7) 청량리지역 일대 (9) 미아지역 일대	(2) 신촌지역 일대 (4) 강남·서초지역 일대 (6) 천호지역 일대 (8) 용산·마포지역 일대 (10) 목동지역 일대
	2 금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금지	1·2·4·5 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4 금지	지하철환승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 중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5 금지	(1) 4 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4 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개정안	1금지	환승역 300m 이내 / 비 환승역 100m 이내 + 기존 1금지	
	2금지	환승역 500m 이내 / 비 환승역 300m 이내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3금지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다만,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의 경우 기준점을 어느 곳으로 두느냐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급지가 바뀔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급지 선정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 기준별 급지변경 사례 : (예시) 서울역 ~ 서울역서부관광버스주차장



기존 상대적으로 낮은 급지로 분류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급지 상승³⁾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요금 인상에 대한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가 위탁중인 주차장의 경우⁴⁾ 기존 급지에 따른 요금을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낙찰된 만큼 급지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계약기간에 따른 급지 조정을 명확히 하여 소송 등의 분쟁으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일부 서울시 급지체계를 따르는 자치구 위탁 주차장의 경우에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

3) 공영주차장 주차급지체계 개편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08호, 2020.4.23)
3급지→1급지(17개소), 4급지→1급지(13개소) 등 상위급지로 변경 주차장 다수 존재
 4)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1774, '20.8.12)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주차장 : 총 134개소 17,467구획
 - 공단지영 : 46개소 12,522구획 / 제3자위탁 : 88개소 4,945구획
 ○ 제3자 위탁(민간업체) 현황 / 위탁기간 : '19. 11. 1. ~ '20. 12. 31.(1년 2개월)
 ※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추진에 따라 기존 수탁업체와 1년 2개월 간 재계약

- 아울러, 급지변경에 따른 기본요금은 변경되지 않으나 기존 노외주차장 월정기권 기준이 주간에서 전일로 변경되어 동일 금액으로 주간에서 전일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외주차장 정기권 요금 인하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내용[별표 1]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현행)			(개정안)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전 일	야 간
1급지	400	250,000	100,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8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00,000	40,000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20,000	-	-	-
		기타 50,000				
5급지	50	30,000	20,000	-	-	-

■ 주차요금 산정시 공시지가 변수 적용(안 별표1 각주)

- 안 별표1의 각주 내용은 3급지 체계의 1회, 1일, 월정기권 이용 요금 산정시 '공시지가 변수'를 요금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주차요금 산정 기본식

<p>▪ 주차요금 산정 기본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주차 요금}_{(A, B)} = (\text{기본 요금}_{A\text{급지}}) \times (\text{지가변수}_{B\text{법정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요금_(A, B) : B 법정동 내 A급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요금 • 기본 요금_{A급지} : A급지의 공영주차장 기본요금 ... (A = 1급지, 2급지, 3급지) • 지가 변수_{B법정동} : $\sqrt{\text{B동 평균공시지가}} \div (\text{서울시 평균공시지가})$... (B = 서울시내 법정동) 	<p><공시지가 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눈 값을 4제곱근 한 것 • 적용기간 : 매년 변동되는 공시지가의 현실적 반영을 위해 3년 단위로 주차요금 산정
---	---

- 동 개정안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것은 공영 주차장의 급지기준이 환승역 중심으로 변경될 경우 지역별 요금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공시지가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지역별 요금차이가 크고⁵⁾, 공영 주차장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주차장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에서 (최대 620% 인상) ‘공시지가 변수’를 반영함으로써
공시지가의 극단적 차이가 급격한 요금인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역 형평성을 요금산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이에 따라, 금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된 급지에 공시지가 변수를 적용 하고 최대 인상을 75%를 적용하면 전체지역 평균 인상율은 약 35%(69원) 로 나타남

5)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6.12) : 각 행정동별 지가 변수 산출
- 명동2가 지가변수는 오크동 지가변수의 213.5배에 달함

행정동	평균	지가변수
서울시 전체	₩ 2,964,906	1.00
상위 5개 행정동	명동2가	₩ 37,989,452
	충무로1가	₩ 33,332,368
	명동1가	₩ 29,520,068
	종로2가	₩ 27,178,445
	충무로2가	₩ 22,047,804
하위 5개 행정동	개화동	₩ 328,119
	양평동	₩ 295,000
	오쇠동	₩ 215,723
	과해동	₩ 181,415
	오크동	₩ 167,184

※ 급지별 주차요금 변동내역

현행	변경	현행요금 (5분기준)	변경요금 (5분기준)	요금 인상률	공시지가 변수
1급지(29개소)	1급지(28개소) 2급지(0개소) 3급지(1개소)	515원	629원	23%	0.8~1.5
2급지(24개소)	1급지(7개소) 2급지(11개소) 3급지(6개소)	250원	269원	8%	0.8~1.2
3급지(31개소)	1급지(17개소) 2급지(8개소) 3급지(6개소)	150원	223원	48%	0.8~1.2
4급지(20개소)	1급지(13개소) 2급지(2개소) 3급지(5개소)	100원	163원	63%	0.5~1.2
5급지(2개소)	1급지(2개소) 2급지(0개소) 3급지(0개소)	50원	80원	60%	0.7~0.9
전체지역 평균		261원	330	35%	0.5~1.5
(녹색교통지역 평균)		474원	654	39%	0.8~1.5

○ 다만, 동 개정안은 공시지가 변수를 3년마다 산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시지가가 인상될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3년 주기로 조금씩 인상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안은 기존 주차요금표 하단에 명시된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 인근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 즉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한 요금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현재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권 요금 변동과 함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급격한 요금증가가 발생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월정기권 요금 편성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련 개정내용[별표 1 주차요금표 하단]

현행	개정안
※ <u>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u>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공시지가 변수는 3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 근거(월 4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 <u>별도 근거 삭제</u> 급지별 주차요금 적용

■ 주차요금 조정범위 50% → 80%로 변경 (안 별표1 비고란 제4호)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4호는 시장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의 조정범위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요금이 저렴한 4,5급지의 환승주차장이 1,2급지로 변경⁶⁾됨에 따라 일부지역의 경우 6배 이상의 요금 상승⁷⁾이 이어질 수 있고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 불만이 예상되는 바, 녹색교통지역에서 주차수요 30% 감축을 위해 적용 예정인 최대인상을 75%⁸⁾ 한도로 정하여 요금인상의 파급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6) 3급지→1급지(17개소), 4급지→1급지(13개소) 등 상위급지로 변경 주차장 다수 존재

7) 급지 변경에 따른 요금인상 사례

• 3급지→1급지 변경사례	▸ 송파구 성내역 주차장 : 267% 인상 [150원/5분 → 550원/5분]
• 4급지→1급지 변경사례	▸ 성동구 옥수역 주차장 : 350% 인상 [100원/5분 → 450원/5분]
	▸ 강남구 일원역 주차장 : 300% 인상 [100원/5분 → 400원/5분]
• 5급지→1급지 변경사례	▸ 노원구 화랑대역 주차장 : 620% 인상 [50원/5분 → 360원/5분]

8) 공영주차장 주차금지체계 개편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08호, 2020.4.23)

- 시장의 인상을 조정범위는 '12년 10월 경북궁 관광버스 주차요금 인하율(34%)을 고려하여 당초 30%에서 50%로 인상되었음을 감안 할 때⁹⁾ 동 조항은 주변 특수여건을 반영한 일부 주차장에 대한 경감을 목적으로 조정된 바 있음
- 하지만 금번 개정안에서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인상을 조정 하기 위해 시장의 조정범위를 80%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주차장 이용요금 권한범위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주차요금의 당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동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을 80% 범위 내에서 경감 또는 인상할 근거로 인용 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예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녹색교통지역 주차요금 **25% 인상시행 효과**

- 주차요금 인상 시행 3개월간('20.1.1~3.31) 모니터링 결과, 녹색교통지역내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8% 감소로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행1개월 4% → 시행2개월 10% → **시행3개월 10%**

<녹색교통지역 요금인상 전·후 전체 차량 주차수요 변화>

(단위 : 대/일)

구 분	시행 전 ('19.12)	시행 후 주차대수(증감율)			
		평균	'20.1월	'20.2월	'20.3월
녹색교통지역(전체 차량)	7,679	7,062(Δ8%)	7,367(Δ4%)	6,918(Δ10%)	6,930(Δ10%)

※ 공휴일은 분석에서 제외

- 녹색교통지역 교통특별대책 2020년 승용차통행량 10% 감축, 2030년 30% 감축목표에 부응하는 주차수요관리 정책 시행

▸ 주차요금을 현행대비 **25% 인상시 주차수요 10% 감축, 75% 인상시 30% 감축 가능**(시영 주차장의 주차수요탄력성 -0.4를 적용시)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6호) 검토보고서(241회 임시회)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정기권 우선 발행 (안 별표1 비고란 제6호)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6호는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가 정기권을 발행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현재 운행 중인 160여대의 전기택시 외에 2019년에 3,000대의 전기택시 도입 계획을 수립¹⁰⁾한 바 있고 마을버스도 올해 37대의 전기버스를 도입 예정¹¹⁾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보급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 중 친환경적 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서울시 시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관광버스 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안 별표1 비고란 제7호)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7호는 관광버스 주차장 주차요금을 승용차 1구획의 2배로 하되, 최초 2시간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 결제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되는 경우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10) “2019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택시물류과-12841, 2019.4.11.)

11) 서울시, 그린모빌리티 선도할 전기버스 도입 박차… 하반기 166대(보도자료 2020.7.20)

기존 요금체계가 5급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시간당 3천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에는 10분당 1,000원을 징수 하였으나, 이를 해당구역 승용차 구획을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요금 기준으로 해석됨

- 다만, 개정된 요금기준과 기존 요금제를 비교할 때, 1, 3급지의 경우 공시지가와 2시간내 50% 할인의 영향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요금이 기존요금제와 많은 차이를 보일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광버스 주차장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 요금 산정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버스 운영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개정 전후 시간별 관광버스(노상) 주차요금

(단위 : 원)

구 분	현행			개정안		
	2시간	3시간	4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급지	6,000	12,000	18,000	12,000	24,000	36,000
2급지				6,000	12,000	18,000
3급지				3,600	7,200	10,800

* 공시지가는 1로 가정

■ 녹색교통지역, 환승 주차요금 경감 대상 제외 (안 제7조제1항제4호)

- 안 7조제1항제4호는 기존 1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적용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50% 이내 할인 조항을 “1급지 제외”가 아닌 “녹색교통지역 제외”로 수정하는 것임

- 서울시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도심을 만들기 위해 사대문 안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선정하고 차량진입 억제 및 친환경교통수단 확대 정책¹²⁾을 시행 중에 있고, 녹색교통지역은 강화된 주차수요 감축방안 적용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급지체계 변경으로 기존 1급지에서 제외된 지역¹³⁾의 주차장의 경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감 여부에 대한 검토와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 월 정기권 관련 (안 제18조제3항)

- 안 제18조제3항은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의 정기권요금을 기존 5급지 요금 기준에서 3급지 야간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의 정기권 요금이 5급지 기준으로 산정되나, 개정안에 5급지가 삭제되어 새로운 기준금액 마련이 필요하고 개정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경우, 3급지 전일 정기권 기준요금이 10만원으로 현행 요금(3만원)과 비교할 때 급격한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월 정기권 요금을 3급지 야간요금(4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요금 인상을 폭을 최소화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송사업자의 불편을

12) 서울시, 12.1.부터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 친환경 녹색교통 천국 탈바꿈(보도자료, 2019.11.26.)

13) 기존 1급지(4대문 주변지역, 신촌지역, 영등포지역, 강남·서초지역, 잠실지역, 천호지역, 청량리지역, 용산·마포지역, 미아지역, 목동지역)

최소화 한다는 점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해 월 정기권 요금을 야간요금만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최소 금액 선정이 외의 요금 선정기준의 당위성이 결여되는 바,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의 정기권요금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정기권 금액(5급지 요금기준) → 3만원(주간) + 2만원(야간) - 주·야간 모두 이용 : 월 3만원	- 정기권 금액(3급지 야간 요금기준) → 월 4만원

■ 주차전용건축물,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기준 1급지 지역반영 (안 제5조제2항, 제16조2항, 제21조제1항)

- 안 제21조제1항은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주차금지체계 개편으로 1급 지역이 환승주차장 중심으로 바뀔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의 제한 대상 지역을 기존 1급지역(4대문 주변지역 등 10개 지역)으로 명시하는 것임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¹⁴⁾, 서울시는 그간 4대문 주변지역 등

14) 주차전용건축물,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법 위입 근거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1급 지역이 4대문 주변지역 등 10개 지역에서 환승주차장 중심으로 바뀔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 지역을 기존 1급지 지역으로 바꾸려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구분	내용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제5조)	<p>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p>
노외주차장 외 부대시설 설치기준(제16조)	<p>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제21조)	<p>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p>